

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3. 14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3월 9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2일 원안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3. 1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중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를 조문에 명시하여 시민들이 대상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명시 (안 제4조제1호)
 - 개별법에 지원 규정이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(종로구새마을회, 바르게 살기운동종로구협의회), 안보관련단체(한국자유총연맹),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-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 생활계획과장으로 변경 (안 제10조제3항제1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正案의 要旨 (없 음)

7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